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2월 18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법제처는 2024년 2월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주요 업무로 제시하며, 신고 대상 휴업기간 조정 등의 법령 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이후 정부는 2024년 12월에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개정안은 그중 하나에 해당함.

현행법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인삼류제조업자가 ①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②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업기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바, 다소 짧은 기간을 휴업하는 경우에도 인삼류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인삼류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에 따라 ① 인삼류제조업자가 경미한 사유로 3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업신고 및 영업재개신고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② 3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신고 부담이 완화될 것이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은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신고에 관한 의무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br>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생략)                                                                                                                                                       |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br>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br>(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u>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br/>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br/>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br/>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br/>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br/>여야 한다.</u> | ③ -----<br>-----<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br/>정하는 기간</u> -----<br>-----<br>-----<br>-----<br>-----<br>-----. |
| <u>&lt;신 설&gt;</u>                                                                                                                                                                               |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br><u>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br/>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br/>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br/>터 20일</u>                                  |
| <u>&lt;신 설&gt;</u>                                                                                                                                                                               |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br>업한 날부터 30일                                                                                                |
| <u>&lt;신 설&gt;</u>                                                                                                                                                                               | 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br><u>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br/>날부터 30일</u>                                                                         |
| ④ ~ ⑪ (생략)                                                                                                                                                                                       | ④ ~ ⑪ (현행과 같음)                                                                                                                    |